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9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위성곤 · 허영 · 홍기원

박지원 · 이용선 · 이건태

신정훈 · 박균택 · 진성준

김영배 · 박정현 · 강득구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권 주기 중심의 단기 계획과 부처별 분절적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연속성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장기 구조변화) 분석, 시나리오 검토, 장·단기 과제의 정합적 설계가 제도화되어야 하나,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분석하고,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는 장기과제(20년)와 단기과제(임기 내)를 구분·연계하여 제시하고,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권고를 통해 전략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

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 자문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연도별 추진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정연속성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우선순위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미래전략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환경의 전망·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연속성과 미래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뒷받침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국가미래전략의 수립·추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른다.

1.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자유와 인권, 법치 및 민주성에 기초할 것
2.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책임: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
3. 공익성과 포용성: 지역·세대·계층 간 균형과 형평을 도모할 것
4. 증거기반과 전문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분석과 전문적 판단에 기초할 것
5. 개방성과 협력: 다양한 관점·문화의 수용과 국제·지역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것
6. 연속성과 유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응할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미래전략의 수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재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미래보고서

제5조(국가미래보고서의 수립·제출 등) ① 대통령은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의 장기 운영환경에 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정리한 국가미래보고서(이하 “미래보고서”라 한다)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보고서는 작성연도 기준으로 20년 이후의 장기적 관점으로 작성한다.

③ 미래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여건 및 장기 구조변화에 관한 미래환경 전망·운영환경 분석
2.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

적 및 정책적(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변화 요인

3. 분야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요소와 그 대안 방향

4. 분야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의 식별 및 핵심 논점

5. 미래 환경의 복수 시나리오 및 그 영향분석

6.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7. 장기과제 : 작성 연도 기준 20년 후의 환경에 대한 국가 비전, 중
장기 목표, 분야별 기본방향, 재정·입법·규제의 기본방향

8. 단기과제 :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과제 및 주요 추진일정, 재정
· 입법·규제의 추진방향과 부처별 역할·책임

9. 국민 참여 절차 계획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함하는 사항

④ 대통령은 미래보고서를 수립할 때에는 제3항제7호 및 제8호 간
의 연계·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미래보고서의 수립 및 제출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참여 보장) ① 정부는 미래보고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절차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분류하여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정리하여 미래보고서에 반영하고, 미래보고서 제출
시 그 요지와 반영 내용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세대·지역·계층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참여절차, 공표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회 심사 및 권고) ① 미래보고서의 심사는 「국회법」에 따른 소관 위원회 심사에 따른다.

② 국회는 미래보고서 및 이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국회의 권고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미래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미래보고서의 변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보고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국회가 보고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정부는 미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연도별 추진보고) ① 정부는 매년 2월 임시회 전까지 미래보고

서에 따른 전년도 추진현황과 차년도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요지를 「국회법」에 따른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추진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미래위원회

제11조(국가미래위원회) 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장기과제·기회의 도출과 정리,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 미래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국민참여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7. 제8조 미래보고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세대·계층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다.

⑤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조사·연구 및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국가 중장기전략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제18조(경비 지급)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래보고서를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